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모경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73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모경종・이용우・민병덕

김현정 · 김한규 · 황정아

박범계 • 김 윤 • 김동아

송재봉 · 남인순 · 김교흥

정진욱 • 이준석 • 이광희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,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.

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,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.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·군·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%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

정교부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에 소재한 시·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(안 제29조 및 제29조의2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모경종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74호) 및 「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7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제1호 중 "화력발전·원자력발전"을 "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폐기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화력발전·원자력발전"을 "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폐기물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화력발전·원자력발전"을 "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폐기물"로, "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소"을 "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이"로 한다.

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화력발전·원자력발전"을 "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폐기물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화력발전·원자력발전"을 "화력발전·원자력발전 및 폐기물"로, "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대립시설이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) 제

29조제1항·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에 대하여 부과·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시・군 조정교부금) ① 시	제29조(시・군 조정교부금) ①
•도지사(특별시장은 제외한다.	
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다음	
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(인구	
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	
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	
경우에는 47퍼센트)에 해당하	
는 금액을 관할 시·군 간의	
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	
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	
여야 한다.	<u>.</u>
1. 시・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	1
세·도세(<u>화력발전·원자력발</u>	<u>화력발전 · 원자력발</u>
<u>전</u>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,	<u>전 및 폐기물</u>
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	
방교육세는 제외한다)의 총액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・도지사는 <u>화력발전・원</u>	③화력발전 • 원
<u>자력발전</u> 에 대한 각각의 지역	자력발전 및 폐기물
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	
분에 따라 관할 시·군에 각각	
배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	<u>-</u>

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·군 및 제29조의2제2 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.

- 1. <u>화력발전·원자력발전</u>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: <u>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</u>소가 있는 시·군
- 2. (생략)
- ④ (생 략)
- 제29조의2(자치구 조정교부금) ① 제 (생 략)
 -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<u>화</u> <u>력발전·원자력발전</u>에 대한 각 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 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 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·군 에 균등 배분한다.
 - 1. 화력발전 · 원자력발전에 대 1. 화력발전 · 원자력발전 및 폐

1. <u>화력발전 • 원자력발전 및 폐</u>
<u>기물</u>
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
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이
2. (현행과 같음)
4) (현행과 같음)
]29조의2(자치구 조정교부금) ①
(현행과 같음)
②
역발전·원자력발전 및 폐기물
<u> </u>
<u>.</u>

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 징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: 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

- 2. (생략)
- ③ (생 략)

기물
<u>화력발전소·원자력발전</u>
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이
2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